



# 원천징수 납부요령(하)



임현석/세무사

## 예금·채권 등에 대한 이자소득

\* 예금·채권 등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액에 원천징수 세율을 곱하여 이자소득세를 계산합니다.

- 비과세 이자소득
  - 개인연금저축의 이자
  - 가계 장기저축의 이자
  - 근로자주식저축의 이자
  - 장기 주택마련저축에서 발생한 이자(저축기간 10년 이상)
  -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이자 ('98. 12. 31 가입분 까지)
  - 조합금고에 대한 2,000만원 이하 예탁금이자 또는 1,000만원 이하 출자금이자 ('96. 12. 31 이전 발생분까지)
- 분리과세되는 소득
  - 가계생활자금 저축이자 : 세율10%
  - 장기채권 또는 장기저축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분리과세를 신청한 이자 또는 할인액

- 소액가계저축의 이자
  - 소액채권 저축의 이자
  - 소액 보험차익 이자
  - 근로자 장기저축 이자
  - 근로자 장기증권저축 이자
  - 근로자 증권저축 이자
  - 국민주 신탁 이자
  - 장학적금 이자
  - 기타의 일반저축이자 : 세율15%
  - 사채이자 : 세율25% → 기준금액(부부합산 이자·배당소득 4,000만 초과)에 관계없이 종합과세 대상이 됨
- } 세율10%

\* '96년부터는 이자소득의 경우 세법에 특별히 비과세·분리과세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금융소득(이자·배당)이 연간 부부합산하여 4,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.

## 주식배당·분배금 등의 배당소득

\* 배당소득의 경우에도 이자소득과 마찬가지로 '96년 이후 부터는 세법에 특별히 비과세, 분리과세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금융소득(이자·배당)이 연간 부부합산하여 4,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.

종류	계약기간	세율
장기채권	5년이상~10년미만(10년이상)	30%(25%)
장기저축	5년이상	30%

- 비실명이자 : 세율40%(90%)
-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이자소득

\* 주식 배당금이나 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배당금이나 분배금에 원천징수세율을 곱하여 배당소득세를 계산합니다.

- 비과세 배당소득
  - 가계저축에 대한 배당소득('98년 12월말 이전 가입분에 한함)
  - 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한 배당소득('98년 12월말 이전 불입분에 한함)
  - 조합금고에 대한 예탁금 2,000만원 이하 또는 출자금 1,000만원 이하에 대한 배당소득('96. 12. 31 이전 발생분)
- 분리과세되는 배당소득
  - 비실명 배당소득 : 세율40% (90%)
- 종합과세대상이 되는 배당소득
  - 소액주주의 상장법인 배당 } 세율15%
  - 기타의 배당 } 세율15%
  - 대주주의 상장법인 배당 } 세율15%
  - 비상장 법인의 배당 } 세율15%

(금액에 관계없이 종합과세대상이 됨)

### 상금, 강연료 등의 기타소득

- \* 상금, 강연료 등과 같이 일시적인 소득을 개인에게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액에서 다음의 필요경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곱하여 소득세를 계산합니다.
  - 공익법인이 주무관청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강연료, 방송해설료, 전속계약금, 일시적인 문예창작 소득, 주택임주지체상금 : 75%
  - 광업권, 어업권, 공업소유권, 산업상 비밀 등의 자산이나 권리의 대여금액 : 80%(다만, 필요경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모두 공제함)
- \* 기타소득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.
  - 원천징수세율 : 20%
  - 상금, 보조금, 당첨품, 보상금, 위약금, 배상금
  - 물품, 장소를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
  - 유실물 습득,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한 보상금이나 새로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
  - 강연료, 방송해설료, 연기사료,
  -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
  - 재산권 알선수수료, 사례금, 전속계약금과

### 일시문예창작소득

- 영화필름, 방송용필름, 저작자 또는 실연자, 음반제작자, 방송사업자 이외의 자가 받는 저작권 또는 저작권접점 사용료와 광업권, 어업권, 공업소유권, 산업정보 영업권, 산업상 비밀 등 권리나 자산의 대여료 등
-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원천징수만으로 끝나는 기타소득 : 20%
  - 주택복권 당첨소득, 체육복표 당첨소득, 대전세계박람회 복표당첨소득, 기술개발복권당첨소득
- \* 기타소득금액이 연300만원 이하인 개인은 편의에 따라 원천징수로 끝내도 좋고, 종합소득에 합산 신고하여도 됩니다.
- \* 기타소득금액이 매건마다 1만원 이하인 때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합니다.

### 사업소득

- \* 세법에서 원천징수 대상소득으로 특별히 열거하고 있는 사업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며 법인에게 지급하는 때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합니다.
- \*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거래상대방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1%입니다.
- \*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은 원천징수 후에 모두 종합과세됩니다.
- \*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
  - 운수·창고 및 통신업종 도선업·화물중개업 및 대리업
  - 변호사업·변리사업·법무사업 등 법무관련 서비스업
  - 공인회계사업·세무사업 등 회계서비스업
  - 부동산 감정업
  - 신용조사업
  - 인력공급 및 고용 알선업
  - 소프트웨어개발·컴퓨터 프로그램개발업 및 공급업 등
  - 건축·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업과 기술시험·검사 및 분석업
  - 저술가·화가·배우·가수·영화감독·연출가·촬영사 등 자영 예술가



- 직업선수·코치·심판 등 자영 경기업
- 의료법에 의한 의사·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영위하는 의료업
- 의료가사법에 의한 임상병리사·방사선사·물리치료사·작업치료사·치과과공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용역
- 보험가입자의 모집·증권매매의 권유·저축의 장려·집금 등을 행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, 권장수당, 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
-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각종 서류의 복사, 속기, 번역, 통역 및 기타 사무관련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사무관련 대리 서비스업

\*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.

-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(부동산 임대·사업·산림소득자)
-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
-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자
-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
- 법인격 없는 사단·재단 기타단체(법인으로 보는 단체)

## 법인세의 원천징수

\* 법인에게 소득세법상의 이자소득·증권투자신탁 수익의 분배금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곱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, 원천징수를 당한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할때에 정기분 법인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면 됩니다.

\* 원천징수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 이자소득금액 : 20%(비영업대금의 경우는 25%)
- 증권투자 신탁수익의 분배금 : 20%

## 주민세의 원천징수

\* 원천징수하는 세액에 주민세가 부과되는 경우소득세할 주민세로 결정세액의 10%를 원천징수하여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. (법인세 원천징수시에는 제외)

## 금융실명제

\* '93. 8. 12부터 시행되고 있는 "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 재정경제 명령"에 의하여 '93. 10. 12까지 가명 또는 차명에 의한 금융자산(예금 등)을 실명으로 전환하지 아니하면, 그 후에 발생하는 이자·배당소득에 대하여는 90%의 소득세와 그 세액의 10%를 주민세로 원천징수하게 되고 '93. 10. 13이후 실명전환을 하게 되면 원본에 대하여도 과징금을 징수하게 되는데 '94. 8. 11까지 실명으로 전환하면 '93. 8. 12현재의 금융자산가액의 10%를 징수하고 그 후 매년 10%씩 가산하여 최고 60%까지를 과징금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

## 원천징수한 세금은 익월 10일까지

\* 원천징수한 세금은 다음달 10일까지 은행·우체국 등의 금융기관에 내셔야 합니다.

## 지급조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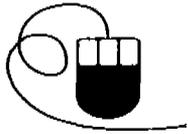
\* 이자·배당·사업소득·근로소득·퇴직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셔야 합니다.

\* 지급조서의 제출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.

- 이자·배당·사업소득·기타소득 등 :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말일까지
-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 : 해당년도의 다음년도 2월말일까지
- 당해년도 중도 퇴직자 :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말일까지

바로 잡습니다.

지난달 원천징수 납부요령(상)의 내용 중 근로소득 공제에서 과세되는 금액은 연간 400만원 이하 ▶ 500만원 이하로, 제외대상으로 800만원 한도 ▶ 900만원 한도로 바로 잡습니다.



# 한전 KIS망을 이용한 PC통신 이용안내

- ① PC통신 준비사항 : 모뎀, 통신프로그램, 한전 KIS 망 ID
- ① 사용 PC : 통신을 할 수 있는 모든 PC로 가능합니다.
- ① 접속번호 : 01480, 3459-1000, 565-9000, 565-9100, 565-9200
- ① 접속방법 : 위 번호로 접속한 후 go keea를 입력하면 아래와 같이 KEEA 메인메뉴가 나옵니다.  
(ID가 없으신 회원은 kepeco를 입력하셔서 접속한 후 가입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.)

<b>전력기술인협회 [KEEA]</b>		연락처 02)888~4224
<p><b>[협회소개]</b></p> <p>11. 현 황 12. 조직과 운영 13. 주요사업실적</p> <p><b>[질의응답]</b></p> <p>31. 회원관리 32. 경력관리 33. 기술 및 선·해임 34. 기 타</p>	<p><b>[협회지]</b></p> <p>21. 협회동정 22. 전기계 단신 23. 기술정보 24. 문예춘추 25. 공지사항 26. 기 타</p> <p><b>[기 타]</b></p> <p>41. 협회민원안내 42. 전기관련법 43. 구인 / 구직 44. 자료실(보내기 / 받기)</p>	
<p>도움말(H) 이동(GO) 상위화면(P) 기타명령어(O) 종료(X) 선택 &gt;</p>		

## 협회소개

협회소개에서는 한국전력기술인협회의 연혁, 주요 업무, 협회(본·지부) 소재지 및 관할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.

## 협회지

협회지에서는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서 매일 발행하고 있는 협회지 전력기술인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.

# KEEA 메인 메뉴

## 질의응답

질의응답에서는 회원님께서 궁금한 점, 건의사항 등을 PC통신을 이용하여 올리신 내용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명쾌한 회답을 들을 수 있는 많은 회원님들과 공유하는 공간입니다.

## 기 타

기타에서는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 경력관리 업무안내, 경력수첩, 감리원수첩, 설계사면허 및 확인서 발급, 전기관련법 등의 민원업무 안내와 자료실을 이용하시면 직접 협회나 지부에 가셔서 서식을 구매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.